

# 체당금 조력지원제도

## ● 사업목적

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·휴업수당·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**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**

\* 체당금 관련 상담,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·작성 등

## ● 사업내용

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

## ● 지원대상

도산등사실인정\*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·휴업수당·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

\*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(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의 결정)의 경우 지원 제외

## ● 지원내용

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,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**300만원**을 한도로 지원

\*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, 불인정 45만원,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 (최소 지원금액 57만원)

## ● 사업추진체계



## 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